

# 2022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2022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02. 0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 1. 사업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제가 있는 영상 관련 이벤트 행사 지원을 통해 다양한 문화, 생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제주지역 영화인의 창작 작품 상영기회를 제공하여 영상문화 확산은 물론 지역문화 소통에 기여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고자 함

##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도내에서 진행되는 행사로서 영상을 통하여 제주의 이미지 제고 또는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최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규모 : 5개 행사 내외
  - 상영규모, 진행일수, 진행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지원
  -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범위 내 행사별 차등지원
  - ※ 총 예산범위 내 지원과제 개수 조정이 가능하며, 행사별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음
  - ※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격 : 당해 사업연도(2022년 1월 1일) 이전 주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영상을 통한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프로젝트 팀
  -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 단체가 신청해야 함
  - ※ 법인(단체) 당 1개 행사 지원신청 가능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2월 19일(정산완료일시)까지
- 지원액 사용범위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지원금 교부 이전 집행 사업비 불인정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 구입, 공과금 등) 불인정

### 3. 지원조건 및 참여제한

#### ○ 지원조건

- 완성보증을 위하여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지원결정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매칭
  - ※ 자부담 재원 미확보 시 협약체결 불가(선정 취소)
- 행사 홍보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로고 노출 및 지원사실 표기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 진행

#### ○ 참여제한

##### 제외대상

1.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인 경우
  2. 신청한 행사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유관기관 포함) 또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타부서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지방비 중복지원 불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의 정산·환수금 등이 미완료·미납 중인 경우
  5. 행사의 공익성이 떨어지거나 단순 경연대회로서 참여자가 극소수 특정인으로 제한되는 경우
  6. 행사 형식이 아닌 콘텐츠 제작 또는 단순 전시, 공연, 학술행사인 경우
  7.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으로 판단했을 때 행사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기획·대행사 등)
  8. 그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접수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 진행일정

- 사업공고 : 2022년 2월 9일 ~ 3월 31일
- 접수기간 : 2022년 3월 21일 ~ 3월 31일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yslee@ofjeju.kr)

- 제출서류 및 양식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ofjeju.kr>) 참조
- 실적증명 자료 중 파일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제주시 신산로82(일도이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층)

※ 문의 : 영상산업팀 이윤성 ☎ 064) 735-0601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붙임1], [붙임2]
- 2022년도 영상문화 육성지원 공모사업 발표 자료 [붙임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붙임4]
- 신청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자부담 이행 협약서 1부[붙임5]
-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기존지원행사) 직전년도 신청사업 실적증명자료 각 1부
- (※ 신규지원행사) 최근 3년간(2019~2021년도) 유사사업 실적증명자료 각 1부

※ 실적증명 자료 : 실적증명서, 결과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또는 브로슈어 등 행사 개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 사업계획서는 작성서식(A4용지 종 방향) 작성
  - 계획서 본문 내용은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기재(한글문서기능 '쪽 번호 매기기')
- 사업계획서 양식은 변경불가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첨으로 첨부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사업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취소됨
- 사업집행계획은 인건비, 임차비, 행사진행비 3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작성
  - 코로나19에 관한 방역 등 방역시행 예산 필수
  -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 안전관리에산 배정 필수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각종 매체 활용 홍보 등 홍보예산 배정 필수

## 5. 선정방법 및 기준

○ 심사일정 : 2022년 4월 중 (※일정 변동 가능)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필수제출 서류 중 미비서류 발생 시 지원 취소될 수 있음)

- 2차 : 프리젠테이션(10분 이내) 및 질의응답 (평가위원 구성)

※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

※ 2차 심사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항목별 배점

심사기준		심사항목
정량 평가 (20점)	역사성 및 지속성(20점) ※ 기존운영 행사	- 개최년수(횟수) 등급별 평가 - 최초 개최 이후 지속성 (중간 미개최 여부)
	유사사업 수행경험(20점) ※ 신규참여 행사	- 최근 3년간(2019~2021년) 유사사업(영상관련 도민대상 행사) 수행경험 (※ 실적증명서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시 인정)
정성 평가 (80점)	비전의 명확성 및 발전가능성(20점)	-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기 비전 및 전략 마련 여부 - 비전이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된 정도 - 행사 확대의지와 노력 - 행사 개최에 따른 지역의 영상산업 육성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20점)	- 세부 사업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운영인력과 운영조직 확보 등 사업계획 이행 가능성 - 대표 프로그램의 유무와 부대 프로그램과의 비율 및 조화 - 행사에 대한 예산운용계획의 적절성 및 현실성 - 자체평가 등을 통한 환류 및 개선 노력
	도민참여도(15점)	- 다수 도민들의 향유 가능성 - 시간, 공간적 접근성 - 도민들의 직접참여 정도(도민참여 프로그램 현황 등)
	홍보(10점)	- 홍보 및 마케팅 기획 및 실행능력 - 홍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사회적 책임 이행(15점)	- 코로나19 관련 방역시행 - 사고/건강 관련 안전관리 계획 등
추가 가점	사회취약계층(3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자)
	제주지역영화 편성여부(2점)	- 제주출신 또는 제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감독, 제작자(사)가 제작한 영화 편성여부 - 제주의 문화, 역사, 자연환경 등을 소재로 한 영화 편성여부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선정 행사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6. 기타사항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수행기업(자)은 이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단체(자), 수행단체(자)의 책임으로 봄
- 행사진행 착수 이후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진흥원은 행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외주(용역)의 경우 지원금의 30% 내에서 편성
- 다음의 경우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약기한 내 행사를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진행,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탁,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 기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 및 규칙에서 정한 협약체결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포함 금액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조치)
-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사업내용 및 지원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단체(자), 수행단체(자)의 책임으로 봄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수정공고 추진